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51 발의연월일: 2021. 2. 2.

발 의 자:고영인・김민철・최혜영

이용빈 · 허종식 · 김두관

최종윤 • 전용기 • 전혜숙

강득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,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임.

한편,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 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,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음.

그러나,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,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.

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,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,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 허를 취소하도록 함(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).
- 나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,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,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(안 제8조제7호 및제65조제2항 단서).
- 다.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

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 (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).

- 라.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(안 제65조제2항 본문).
- 마.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,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함(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·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7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제6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

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인정되면"을 "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"으로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의료행위 중 「형법」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의2.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다만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, 제8조제7호에 해당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.

- 1.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
- 2.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
- 3. 제1항제4호·제6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3 년 이내
- 4.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5년이내
- 5.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간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

교부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(같은 항제2호의2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제외한다)에는 면허를 재교부할수 없다.

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해당하면"을 "해당하면(제65조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) ① 제65조제1항제2 호의2·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6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①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,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,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

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및 제65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제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제8조(결격사유 등)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료인이 될 수 없다.

했

1. ~ 3. (생 략)

혅

4. 이 법 또는 「형법」 제233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 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.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지역보 건법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촌 등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,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 한 법률」, 「혈액관리법」,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약사법」, 「모자보건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

개 정 아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 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
- 7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 상 성범죄

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 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 -
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<u><단서 신</u> 설>

2. (생 략) <신 설>

3. ~ 6. (생략)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(改悛)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, 제

,
1
다만, 의료
행위 중 「형법」 제268조의
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
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
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 는 경우
 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
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
경우에는
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

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, 제1항제4호 · 제6호 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 부하지 못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 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재교부 하지 못하며, 제8조제7호에 해 당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 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재 교부할 수 없다.

- 1.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1년 <u>이내</u>
- 2.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
- 3. 제1항제4호·제6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
- 4.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면허 가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 터 5년 이내
- 5.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: 제8조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간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

제66조(자격정지 등) ① 보건복지 저 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
1. ~ 10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